

신구조문대비표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11호, 2023. 7. 28.,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33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1의2. (생 략)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 3. 4. (생 략)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1의2. (현행과 같음)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 3. 4. (현행과 같음)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니코틴용액	
		기타유형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60밀리리터(mL)		

④ ~ ⑦ (생략)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3. (생략)

<신설>

② (생략)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니코틴용액	
		기타유형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100밀리리터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3. (현행과 같음)

24.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용 카트
나.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② (현행과 같음)